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-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·운영을 허용하되,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함(안 제22조의2 신설 등).
-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‘월 단위’가 아닌 ‘일 단위’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,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(안 제35조제3항 등).

II. 검토의견

안 제22조의2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각각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조항 등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두지 않았으므로, 다른 조항 등

에서 규정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도 각각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.

그리고 안 제22조의2의 ‘공동출자법인’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일반을 말하는데, 이것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1호¹⁾의 공동출자법인을 의미한다고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약칭을 두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였으며, 안 제22조의2제1호의 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은 이 법 제2조제8호²⁾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<신 설>	제22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)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) 또는 손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	제22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. 이하 같다) 또는 손자회사(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. 이하 같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

1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출자법인”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(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)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 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.

2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장애인 표준사업장”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·고용비율 및 시설·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	<u>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,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</u> <u>1.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</u> 2. ~ 4. (생략)	<u>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,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(이하 “공동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</u> <u>1.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</u> 2. ~ 4. (생략)
--	---	--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